

안산시민의 흡연피해 보상 소송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2521
------------	------

발의연월일 : 2014. 04.22.
발 의 자 : 이민근의원 외 18인

1. 주 문

- 안산시의회는 시민들이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담배소송에 동참하는 것 외에도 소송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이를 통한 금연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는 것임

2. 제 안 이 유

-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그로 인한 국가적 재정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흡연으로 생기는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 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
-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민이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담배 소송에 동참하는 것 외에도 시민들이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소송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이를 통해 금연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안산시민의 흡연피해 보상 소송 촉구 결의문(안)

안산시의회는 시민들이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동참하는 것 외에도 소송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이를 통한 금연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을 다짐한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흡연은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지정되었으며 미국의 오바마정부도 “담배 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이 늘어나는 등 전세계적으로 흡연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에서도 담배의 중독성, 치명성을 전제로 정부가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한 암발생으로 사망자가 한해 5만명이 넘고 간접흡연과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 증가 등 담배 중독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2012년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과태료 부과, 금연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극적 조치를 담아내기는 한계가 있었으며 2013년 573억원을 의료급여로 지출한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담배 피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배회사가 담배판매로 인한 국민건강 악화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동안 국민평생건강을 지키고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손해액은 연간 2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흡연자가 담배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과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담배회사의 보험재정 손실에 대한 보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민이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담배 소송에 동참하는 것 외에도 시민들이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소송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이를 통해 금연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안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접 당사자인 담배회사에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을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안산시의회는 국민 건강보험 공단 안산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흡연으로부터 안산 시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결의한다.

하나, 앞으로도 안산시의회는 흡연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금연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23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